**XXX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X호**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XX자산운용㈜**와 신탁업자인 **엔에이치투자증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법,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집합투자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의 비율에 관한 제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폐쇄형”이라 함은 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단위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0.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항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XX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신탁 제X호**"로 한다.

1.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다.

투자신탁

1. 혼합자산형
2. 폐쇄형
3. 단위형
4. 사모형
5. 종류형
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7.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없음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법시행령 제 10조 제 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시행령 제 10조제 3항1호내지 제 8호, 제 10호 내지 14호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로 투자금액에 제한없음

④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3조의2(투자신탁의 투자자)**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전문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 경우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납입하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의3(투자권유 등)**

①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판매회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명칭과 수량 등의 일치여부 확인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전담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업자를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중개업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3.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주문 체결업무

5.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 처분 등의 업무

6.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 대리업무

7.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 · 주선 · 대리업무

8.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9. 투자신탁의 설립 또는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10.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를 하는 업무

**제4조의3(업무의 위탁)** ①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신탁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 및 핵심상품설명서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XX년 X월 XX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탁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신탁의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2. 제14조에 의하여 투자한 자금의 전액 회수시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최초설정일로부터 전액회수일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3.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자산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투자재산이 시장상황 등으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4조의 절차를 통하여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3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①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최초설정일부터 **제[5]영업일의 15시 30분이전 매수 신청분까지** 제6조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1.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기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이 투자신탁으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8 제4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 수익증권
3. 종류 C-I 수익증권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수익증권 양도 시 양수인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제14조(투자목적 및 전략)** ①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 기업 관련 신주 및 구주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javascript:;)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공모주 수량 우선 배정 혜택에 따라 공모주 시장에 적극 참여한다. 철저한 기업가치 분석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성장성 및 내재가치가 우수한 공모주에 직접 투자하며, 철저한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토대로 공모주를 선별 투자하고 종목간 차별화된 매매 전략 구사한다.

③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은 채권, 주식, 유한책임사원으로의 출자,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 상장리츠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투자대상 취득한도)** ①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는 50% 이상 이어야 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총액에서 가목 제 1호에 따른 투자는 자산총액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javascript:;) [제2조제2항](javascript:;)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의 매일의 비율을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50%(제1항 가목 및 나목의 합산비율) 및 15% {가목 1)의 비율}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혼합자산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본 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와 법령이 한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할 수 있다.

**제16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2.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나.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다. 환매조건부 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라.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 금액

1. 투자신탁재산 중 법 시행령 제2조제7호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이 20%를 초과하는 행위
2.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3. 비상장증권의 경우 비예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단, 투자시점에 3개월이내에 통일주권 발행 등을 통해 예탁자산으로 변경될 것임을 투자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투자목적회사재산으로 제2호 각 목(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투자신탁재산은 투자목적회사재산으로 투자신탁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투자목적회사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제2호 각 목과 제6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그 밖에 법 및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7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3조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영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핵심상품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수익증권의 판매)**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고객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매입청구일 15시30분까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에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매입 청구일에 대한 영업일 산정은 제2조 제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제19조의2(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100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제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③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의 수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3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합산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가격)**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이하“매수 청구”)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1. 15시 30분 이전까지 매수 청구시: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영업일(T+1일)기준가격

2. 15시 30분 경과 후 매수 청구시: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T+2일)기준가격

3. 제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 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제26조의2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날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1조(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장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22조(투자신탁재산의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기준가격의 산정 및 제공)**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2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 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을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5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26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법 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26조의2(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29조(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영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해당 판매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0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1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2. 종류 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1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3. 종류 C-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9.1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 30조의 2(성과보수)**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이외에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또는 투자자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성과보수는 그 수익증권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성과보수 계산기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성과보수 금액 및 계산방법**

가. 성과보수금액 : Max [초과수익금액(1) x 성과보수율(2), 0]

나. 계산방법

③성과보수는 전부해지일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의 재산에서 인출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성과보수를 성과보수 인출시점에 계산하여 인출함으로 투자자는 기준가격으로 예상한 운용성과보다 미달하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다.

⑤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사항 <

(2022.XX.XX)

※ 상기 투자신탁은 책임운용역의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본부 내 다른 운용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 해당사항없음

**제31조(판매수수료)**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100분의 1.5 이내

**제32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환매되지 아니하므로 환매수수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3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전담중개업자 관련 비용
5. 법률 및 회계 관련 자문비용
6.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7.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8.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9.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2(전담중개업자 관련 비용)**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담중개업자 관련 비용’이라 함은 제 4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말한다.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34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 내용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및 운용제한(금전차입 등을 포함한다) 등의 변경
2.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3. 신탁업자의 변경(제3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관련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35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의 변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제30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대상금액: 제30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료 등)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7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38조(투자신탁의 합병)** ①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이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전원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0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및 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시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산,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배타적 접근권한을 부여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핵심상품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관련법령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4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